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7. 09. 14

발 의 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경위

2007.9.14.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제안사유

2007.5.11 지방자치법이 법률제8423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(안 제1조)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

5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6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7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 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 제90조 및 제91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